

정 관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주)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HD HYUNDAI MARINE SOLUTION CO.,LTD” (이하 “회사”)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2.1 선박건조, 개조 및 수리판매업
- 2.2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업
- 2.3 해상운송 및 무역업
- 2.4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 2.5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 2.6 전기공사업
- 2.7 산업설비수출업
- 2.8 레저 스포츠 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업
- 2.9 소방설비 공사업
- 2.10 기계공업(내연기관 및 터빈, 축수, 운동전달장치, 밸브 및 관이음쇠, 금형, 주·단조품, 펌프 및 전동기, 제지필프, 지공기계, 운반하역기계, 금속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
- 2.11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및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 2.12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2.13 정보통신공사업
- 2.14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 2.15 산업설비 제조·판매 및 용역업
- 2.16 해외 건설업(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철탑재설치공사업)
- 2.17 산업용, 의료용 로봇 및 관련 자동화설비 제조 판매업
- 2.18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 2.19 레이저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 2.20 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 2.21 작동모형 및 쇼전시장비 제조 및 판매업
- 2.22 금속구조재 제조업
- 2.23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선박용 기관, 선미관, 축, 프로펠라, 닻, 타 전기기기의

- 전장품 제조, 판매, 설치, 수리 및 A/S, 엔진부품의 판매, 설치 및 A/S)
- 2.24 유·공압기기 및 유압응용 설비 제조 판매업
 - 2.25 발전·송전·변전·배전용 전기기기 제조업
 - 2.26 전력·전자기기, 산업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판매업
 - 2.27 전기용품 및 계기류 제조 판매업
 - 2.28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 2.29 현장 엔지니어링
 - 2.30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 2.31 부품의 생산 및 재생
 - 2.32 산업기기, 제조판매 및 수리업
 - 2.33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 2.34 컨설팅 사업 (기술전문)
 - 2.35 인재파견업
 - 2.36 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설계 및 설치)
 - 2.37 유무선통신설비 제조 판매업
 - 2.38 에너지 절약 사업
 - 2.39 유전개발 및 원유생산설비 제조·판매, 설치용역 및 부대사업
 - 2.40 정보화 사업
 - 2.41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 2.42 고철판매업
 - 2.43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 판매업
 - 2.44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판매, 설비 엔지니어링, 발전소 개발, 운영관리 및 시공업
 - 2.45 해상운송업
 - 2.46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 2.47 해운 중개·대리점업
 - 2.48 기계장비 중개·대리점업
 - 2.49 조선기자재 및 산업기계 관련 사업
 - 2.50 산업기계 부품 제조판매업
 - 2.51 기타 부품판매업 및 물품공급업
 - 2.52 기계 및 장비수리업
 - 2.53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
 - 2.54 무형재산권 임대업
 - 2.55 근린생활시설 운영업
 - 2.56 조선, 기계, 전기, 전자기기의 연구개발 및 연구사업
 - 2.57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58 연료 및 관련제품 판매업

- 2.59 내항 화물 운송 사업
- 2.60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및 부가통신 사업
- 2.61 통신기기 제조·판매 및 통신 판매업
- 2.62 화학물질 판매 및 관련 사업
- 2.63 탄소배출권 중개, 판매 및 관련 사업
- 2.64 플랫폼 서비스업
- 2.65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 2.66 항만 물류 및 유통 서비스업
- 2.67 위 사업에 부수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3.1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3.2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외의 각지에 공장, 지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marinesolutio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현물출자

20,697,570주 및 현금출자 19,302,430주).

제7조의2 주식의 종류

7-2.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7-2.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3 무의결권 종류주식

7-3.1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하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7-3.2 무의결권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 등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7조의4 우선주식

7-4.1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이하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이라 하고, 이익배당 우선주식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총칭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러한 우선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7-4.2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7-4.3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우선 배당률을 정하고, 본 정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7-4.4 이익배당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배당할 수 있다.

- 7-4.5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 7-4.6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 7-4.7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한다.
- 7-4.8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5 상환주식

- 7-5.1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회사상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주주상환주식”, 회사상환주식과 주주상환주식을 총칭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7-5.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에서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 7-5.3 상환기간(주주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이 때 상환주식 발행시 우선배당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7-5.4 회사가 회사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7-5.5 주주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7-5.6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환의 조건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발행 시에 정한다.

제7조의6 전환주식

7-6.1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의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7-6.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7-6.2.1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7-6.2.2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일)주당 보통주식 1(일)주로 한다. 다만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6.2.3 전환기간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7-6.2.4 회사가 전환할 경우의 전환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6.3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6.4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발생 시에 정한다.

제8조 신주발행

8.1.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8.2.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8.2.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2.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8.2.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2.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2.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3. 제8.2.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8.3.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8.3.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8.3.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8.3.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8.4 어느 당사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납입기일에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다.
- 8.5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8.6. 제8.2조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8.7.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 9.1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9.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가 금지되는 자를 제외한다.
- 9.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9.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9.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9.5.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9.5.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9.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서 부여시 정한 바에 따른다.
- 9.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9.7.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9.7.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9.7.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7.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9.1조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9.1조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본문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9-2.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9-2.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9-2.3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9-2.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9-2.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9-2.1조의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9-2.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2.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2.8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9-2.8.1 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2.8.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9-2.8.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1.1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11.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1.3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11.4 제11.3조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전자주주명부

- 12.1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2.2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기준일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14.1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4.1.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14.1.2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14.2 제14.1.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4.2.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14.2.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14.2.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14.3 제14.1조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14.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14.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4.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5.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5.1.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15.1.2.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15.2 제15.1.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5.2.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15.2.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15.2.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15.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15.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15.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5.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채의 발행

- 16.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6.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총회의 종류 및 개최

- 17.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17.2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에서 정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다.
- 17.3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 18.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하고,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는 본점소재지 및 인근 지역,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18.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 18.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 2 소수주주의 존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19조 의장 및 질서유지권

- 19.1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9.2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9.3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권

- 21.1 각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 21.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3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21.4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러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휴회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의 경과 내용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의사록은 의장과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감사위원회 및 임원

제24조 이사의 구성

24.1 회사의 이사회는 7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24.2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의 선임

25.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24.2조에 의한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34-4.2호에 의한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5.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 2 이사의 해임과 결원

25-2.1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25-2.2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25-2.2.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25-2.2.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25-2.2.3.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시

25-2.2.4. 사망시

제2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선임시에 결정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

27.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한다.

27.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며, 기타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7.3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27.4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 보수

29.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9.2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채택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6장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30조 이사회회 구성 및 권한

- 30.1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회회를 구성한다.
- 30.2 이사회회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 30.3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 회의의 소집

- 31.1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이사회회를 개최하며, 이사회회의 회의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어느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사회회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5일 이내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31.2 전항의 소집권자는 이사회회 개최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이사회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한 서면, 팩스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기타 이사들이 합의한 통지수단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1.3 이사회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2 참관인

이사회회 또는 이사회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회 또는 이사회회 내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회의 의장

- 32.1 이사회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32.2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32.3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32.2조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33.1 이사회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 과반수(기타비상무이사 출석 포함)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33.2 각 이사들이 본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3.1조의 개최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초 예정된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0일부터 3주 이내에 동일한 안건에 대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되 회사는 이러한 계속회 또는 연기회를 위하여 제31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속회 또는 연기회에서는 당초 예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위원회

34-2.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4-2.1.1.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4-2.1.2. 감사위원회

34-2.1.3. 내부거래위원회

34-2.1.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34-2.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되,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의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4조의4 감사위원회의 구성

34-4.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34-4.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4-4.3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4-4.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4-4.5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34-4.6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본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4-4.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4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34-5.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34-5.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4-5.3 제34-5.2조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4-5.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4-5.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4-5.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34-5.7 감사위원회는 제34-5.1조 내지 제34-5.6조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4-5.8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 34 조의 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7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35조 사업연도

- 35.1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35.2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6조 회계장부 및 기록

회사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회계장부 1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무제표

- 37.1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7.1.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37.1.2 손익계산서
 - 37.1.3 기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37.2 감사위원회는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수령한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7.3 대표이사는 감사보고서와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부터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회사의 지점에 3년간 각 비치하여야 한다.
- 37.4 대표이사는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처분

회계연도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 39.1 배당금은 제13조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39.2 배당금은 그러한 배당금 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39.3 배당금에 관한 청구권은 그 결정을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39.4 배당금의 지급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분기배당

- 40.1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40.2 제40.1조의 분기배당은 제13조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40.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40.3.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40.3.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40.3.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0.3.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0.3.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40.3.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0.3.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0.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40.1조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 규정

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2조 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43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대한 부칙

본 정관 제29조의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 시행 이후 정관변경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 중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칙(2025.0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3.2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서 기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4-4.7조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